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제 정	:	1997. 7. 16
개 정	:	2002. 7. 1
개 정	:	2003. 5. 29
개 정	:	2004. 12. 28
개 정	:	2005. 2. 23
개 정	:	2005. 7. 7
개 정	:	2006. 9. 1
개 정	:	2007. 9. 18
개 정	:	2007. 12. 21
개 정	:	2009. 03. 19
개 정	:	2010. 11. 24
개 정	:	2011. 04. 19
개 정	:	2013. 08. 27
개 정	:	2018. 10. 18
개 정	:	2018. 12. 28
개 정	:	2019. 03. 01
개 정	:	2019. 04. 25
개 정	:	2019. 07. 12
개 정	:	2020. 06. 23
개 정	:	2020. 11. 18
개 정	:	2021. 02. 24
개 정	:	2021. 06. 25
개 정	:	2021. 12. 21
개 정	:	2022. 03. 14
개 정	:	2022. 05. 19
개 정	:	2022. 08. 31
개 정	:	2025. 01. 16
개 정	:	2025. 04. 14
개 정	:	2025. 05.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천태불교사상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강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주소는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자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의 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회계년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 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폐지삭제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3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립재단인 대한불교 천태종 교단의 신도이어야 한다.

제18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로 한다.

제18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요청 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④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금강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자 4인
2.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임기는 4년으로 중임 할 수 있다.
2. 감사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3.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는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이사 정원 13인중 7인은 대한불교천태종 재적승려로 하고 나머지는 교육계 및 불

교계의 덕망 높은 인사로 한다.
③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④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상근임원) ①법인에 상근하는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이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폐지삭제
⑥감사 중 1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⑦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8조의4(개방이사의 선임)규정을 준용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익 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해 산

제33조(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5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6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기간 이내에서 이사장이 계약제로 임용한다. 다만, 교원의 신규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처음 2년의 기간으로 계약임용하며 이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 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약조건은 따로 정한다.

1. 교　　수　정년(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제로 하되 7년 이내)까지

2. 부 교 수 5년 이내
3. 조 교 수 6년 이내

③조교와 겸임, 객원, 초빙, 외래, 석좌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부총장과 대학원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교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임용기간, 계약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국가특수지원사업을 취득하여 전담하는 연구교원과 연구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지원조건에 상응하는 예외조치를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면 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임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해당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38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고용된 때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39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38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8조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8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제7호의2에 의한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3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8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0.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40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1조(휴직교원의 처우) ①항 제38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서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항 제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8호 내지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항 제38조 제7호, 제7호의2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2조(면직의 사유) ①항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항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2조의2(직위의 해제)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⑦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 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제43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의2(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 지급제도 실시 여부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되,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

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48조(인사위원회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교학지원처장으로 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3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교원징계위원회는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한다.

⑥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 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징계의 사유 및 종류)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준용한다.

제63조의 3(징계의 양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②항을 준용

한다.

제64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또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5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66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이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7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보·강임·직위해제·휴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임용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8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서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대학의 직원징계위원회규정을 따른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재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4조 ③항, ④항을 준용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2조(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

②법인사무처에는 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국을 두며, 그 외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학교

제73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3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3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명
2. 직원 4명
3. 학생 1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5. <삭제 2021.02.24.>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삭제 2021.02.24.>

제73조의4(교내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73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73조의6(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3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항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3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사무조직) ①대학교에 학교의 총무, 기획, 대외협력, 예산, 전산,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처,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학지원처를 두며, 그 외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항 내지 ⑧항 삭제
⑨제1항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원(소)) ①대학교에는 총장이 필요한 부속기관(부설연구소(원)를 포함)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전임교원 또는 연구원과 특정 대형 연구프로젝트 소관의 교수 또는 연구교수, 그리고 관련 전문 자격 및 경력과 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보할 수 있다.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분장된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속기관에 필요한 사무 부서를 둘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6조(도서관) ①도서관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삭 제
③제1항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77조(정원) 법인 및 대학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 별표 1 > 및 < 별표 2 >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78조(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7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0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김영춘	1944. 2.20	4년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이 사	전종윤	1940. 2.20	4년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	윤홍식	1939. 2.25	4년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	주화중	1948. 1.24	4년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	박형철	1927. 7.10	4년	서울 성북구 동선동 85-43
〃	김영남	1947.12. 2	4년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	변효근	1955. 5.22	4년	부산 진구 초읍동 131
〃	김진수	1952. 8.24	4년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	이계엽	1951.12.25	2년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	남궁장	1955.10.13	2년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	박종열	1951. 7.21	2년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	김유혁	1932. 9.26	2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83-6
〃	이재창	1928. 3. 4	2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92-904
〃	김영태	1933. 1. 7	2년	경기 고양시 주엽동 문촌우성A 306-1702
〃	리영자	1936. 2.19	2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양3차A 3-606
감 사	이윤재	1939. 3. 6	2년	대전 유성구 도룡동 397-46
〃	김상현	1947.12.13	1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 329-2

부 칙

1. 이 정관은 199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설치·경영학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정관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정관은 200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정관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정관은 200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정관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 할 수 있다.
8.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 정관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개정 정관 시행일 이 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9.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33조~제35조,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8호, 제49조 제1항, 제72조 제2항, 제74조 제1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54조 ②~⑤항, 제60조 ②항, 제61조③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71조①~③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395조 ①~③항, ⑤항, ⑥항, 제38조, 제42조 ②항, ③항, ⑤항, ⑥항, ⑧항, 제48조, 제59조, 제61조 ②항, ③항, 제63조의 3, 제71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①항 제6호는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1호,7호～12호, 제39조4호,6호, 8호～10호, 제41조 ①항～③항, 제42조 ①항～②항, 제42조의2 ①항～⑦항, 제75조 ②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71조 ①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②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73조 ③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2의①항, 제39조 3호, 6~7호,10호, 73조의3 ②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73조의3 ①항,③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 제18조의3, (표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0조 ②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54조 ④항,⑥항, 제73조 ③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54조 ①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64조 제2항, 제75조 제2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19조 ①항 1호, 제20조②항, 제20조의2 ①항, ②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73조의6 ①항, ②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43조의2>

(표 1)

법인일반직원 정원(변경 전)		법인일반직원 정원(변경 후)		비 고
총 계	7명	총 계	8명	
일반직계	6명	일반직계	7명	
2급 (참 여)	1명	2급 (참 여)	1명	
		3급 (부참여)	1명	
4급 (참 사)	2명	4급 (참 사)	2명	
5급 (부참사)	1명	5급 (부참사)	1명	
6급 (주 사)	1명	6급 (주 사)	1명	
7급 (주사보)	1명	7급 (부주사)	1명	
8급 (서 기)	0명			
기능직계	1명	기능직계	1명	
운전기사 (8등급)	1명	운전기사 (8등급)	1명	

(표 2)

대학일반직원 정원(변경전)			대학일반직원 정원(변경후)			비 고
총 계		50명	총 계		50명	
일반직 계		26명	일반직 계		42명	
2급 (참여)		2명	2급 (참여)		2명	
3급 (부참여)		2명	3급 (부참여)		2명	
4급 (참사)		5명	4급 (참사)		4명	
5급 (부참사)		2명	5급 (부참사)		6명	
6급 (주사)		5명	6급 (주사)		10명	
7급 (부주사)		8명	7급 (부주사)		16명	
8급 (서기)		1명	8급 (서기)		1명	
9급 (부서기)		1명	9급 (부서기)		1명	
기술직 계		16명	기술직 계		0명	
4급	시설	1명	4급	시설	폐지	
	사서	1명		사서	폐지	
	전산	1명		전산	폐지	
5급		1명	5급		폐지	
6급	시설	2명	6급	시설	폐지	
	전산	1명		전산	폐지	
	사서	1명		사서	폐지	
7급	시설	2명	7급	시설	폐지	
	전산	2명		전산	폐지	
	사서	2명		사서	폐지	
	시청각	1명		시청각	폐지	
	간호	1명		간호	폐지	
기능직 계		8명	기능직 계		8명	
5급		2명	5급		2명	
6급	전기	1명	6급	전기	1명	
	운전	1명		운전	1명	
	음향	1명		음향	1명	
7급	전기	1명	7급	전기	1명	
	운전	1명		운전	1명	
8급	전기	1명	8급	전기	1명	